

노동정책연구
2017. 제17권 제3호 pp.45~7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선주*
민현주**

본 논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2015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것이다. 헤크만의 2단계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참가 및 임금이 높을 것인지, (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은 경제활동참가를 낮출 것인지, (3) 국가별로 결과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변수인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학력이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한국계),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의 체류기간이 길지 않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세 이하의 자녀양육 여부는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모두의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순가구 소득 또한 국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핵심용어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 전국다문화실태조사자료

논문접수일: 2017년 6월 12일, 심사의뢰일: 2017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19일

* (제1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jcho@kwidimail.re.kr)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조교수(newrules@kyonggi.ac.kr)

I. 서론

UN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수민 국가로 선포하였다. 1997년 39만 명 내외였던 한국 체류 외국인¹⁾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 체류외국인은 2,049,411명으로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96,216명)의 4.0%에 해당하며, 충청남도 인구(2,096,727명,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수 8위)에 근접하였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49.6%), 베트남(7.3%), 미국(6.8%), 태국(4.9%), 필리핀(2.8%)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이후 베트남은 미국을 넘어 체류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그 동반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이후 체류외국인 연평균 증가율인 8.4%가 유지되면 2021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백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부, 2016).

실제로 이민자²⁾의 유입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지만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방향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이민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의 주된 현상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

1)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이다(법무부, 2016).

2) 이민(移民, Immigration : 입국이민, Emigration : 출국이민)은 국제연합의 정의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주위에서 쓰이는 정의로는 좀 더 좁아서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체류비자를 받아 거주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주권을 취득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결혼, 투자, 해외취업, 난민 심사 등이 있다.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유학, 어학연수, 외국인 노동자 등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한편 귀화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이민과는 다르다(<https://namu.wiki/w/%EC%9D%B4%EB%AF%BC>, 2017.5. 검색).

되어 있으며, 난민이나 결혼이민, 가족이민 등은 인도적 측면이나 사회적 수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규용, 2014).

이러한 이민자 중 한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³⁾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24만 명에 이르고, 여성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한편 여성결혼여성이민자의 경우 출신국적이 중국 23.2%, 베트남 19.2%, 중국(한국계) 13.5%, 그 외 동남아시아 10.9%, 필리핀 10.1%, 일본 9.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조선주 외, 2017), 이 중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적이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강혜정 외, 2012).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는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인숙 외, 2011; 강혜정 외, 2012).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는 노동시장참여에 있어 이민자로서의 어려움과 기혼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노동시장참여에 있어 이민자 인적자본의 전이성은 출신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민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 출신 이민자의 경우 모국 인적자본은 해당 이민국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또한 임신, 출산, 자녀양육도 이들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행위를 제약하고 있다(Hotz and Miller, 1988; Mroz, 1987; 김현숙 외, 2007; 최형재, 2008). 아울러 이민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 등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각국 이민자들의 위치는 상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조선주 외, 2017)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이민자의 취·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8;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3)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다. 2009년 이전은 F-2-1 및 F-1-3(국민의 배우자), 2010년 이후는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2011.12.15 신설)이다.

강혜정·이규용(2012), 이규용 외(2014)의 연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희(2011)의 연구도 그들의 취업 상황 및 취업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그들이 언급한 대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희(2011)의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조성호 외(2015b)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변인 중 하나를 국가더미로 사용하여 국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논의의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본국에서의 경제상태이며, 이주국가에서 통합하는 과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결혼이주 후 경험하는 경제상태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경제 상태는 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여건과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양인숙 외,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상태를 보면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고,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크기 때문에(조성호 외, 2015a) 향후 한국인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인 6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선택하여 출신국가에 따라 그 영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오랜 이민의 경험을 가진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는 이민의 역사가 짧고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며, 특히 이민이 압축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경험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 가족으로 편입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착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 이후 들어 결혼이민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적응은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경제적 수준이다. 특히 경제적 적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Silver(1994)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문화와 관련성이다. 비록 사회적 배제가 전통적인 경제적 빈곤의 개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하고 이를 통해 빈곤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이기 는 하지만(심창학, 2001, 2003), 경제적 빈곤이 소위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 사회에서의 적응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여성결혼이민자와 해당 가구의 공통의 이해로서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자,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접근하는 단초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여성으로서 시민권 보장이라는 개별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Orloff(199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시민권의 핵심적 주제가 되는 여성의 독립적인 가구형성유지는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이혼율로 인해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

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국사회에 안정적 적응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된다(윤홍식 외, 2005; 윤홍식, 2004). 즉 경제적 적응은 가구라는 공통의 이해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별적 이해를 함께 고려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먼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중요성과 그 의의에 관한 것들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중 다수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민과 국제결혼이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영하 외, 2008).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결혼여성이민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손기영, 2010).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적응은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경제수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설동훈 외, 2005). 경제적 빈곤은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이라는 경제적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 사회에서의 적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양인숙 외, 2011).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시민권 보장이라는 이해와 관련된 문제로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박능후 외(2010)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상태가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인숙 외(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수동적인 정책 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생기게 되는 문화적 갈등과 생활적응 문제, 결혼생활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Becker, 1993),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의 숙련도를 의미하며(Mincer, 1958, 1974), 이 두 요인은 임금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인적자본은 교육이다. Ferrer and Riddell

(2008)은 이민자들의 인적자본과 소득과의 관계에 대해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에 비하여 나중에 이민 온 자의 학력(교육연수)에 의한 소득 상승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Adamuti-Trache and Sweet(2005)와 Fong and Cao(2009)의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연구로 양인숙 외(2011)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인적자본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Ferrer and Riddell, 2008), 인적자본을 이민자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이민국가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이민국가(destination country)가 출신국가(origin country)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민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Long, 1980; Sanromá et al., 2009). 따라서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에게는 모국(origin country)에서 취득한 인적자본과 이민국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직무경험 포함)을 구분하고 있다(Chiswick, 2007; 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이처럼 서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상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반면,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민자들의 노동공급(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강혜정 외, 2012; 양인숙·김선혜, 2011; 이규용 외, 2011, 2014)에 관한 연구,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9;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조성호 외(2015a)에서는 2012년 다문화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조성호 외(2015b)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민길 외(2016)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차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는 결혼여성 이민자와 자녀양육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꼽을 수 있다(최형성, 2009). 이들은 한국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나타나는 저출산의 현상과는 반대로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31%의 자녀수의 증가를 보일 정도(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와 더불어 자녀 출산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착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 상황이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최형성, 2009)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높은 자녀 출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시댁식구나 자의에 의해 자녀양육 활동 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구수연, 2007; 김민정·유명기·이혜경, 2006; 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잉행동장애, 폭력성, 학교 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언어발달 지체(교육인적자원부, 2006), 취학아동의 17.6%가 겪는 왕따 경험(보건복지부, 2005) 등은 이들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빈곤층(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의 잠재적인 문제들과 복합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이 이들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알기 어렵고, 이들의 양육에 대한 설명력도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상기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요인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은 본인의 임금, 비근로소득과 임신·출산·육아 등 자녀 관련 요소 등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의 임금은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 여건과 본인의 인적자본 수준 등에 연계되는 개념이며, 비근로소득과 자녀 관련 요인은 기혼여성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연계되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이미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

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 고유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유보임금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 국적이 상당히 다양하며,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 해도 국가마다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적별 분석을 병행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기 때문에(조성호 외, 2015a, 2015b) 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6). 2015년 조사는 세 번째 조사이며, 통계청을 통

4) 다문화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은 독자적으로 조사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 많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이미 조사된 데이터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국 규모의 데이터인 다문화조사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조성호 외, 2015a, 2015b).

해 일반에게 원자료가 공개된 것은 2015년 자료가 처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접근성 및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 표본은 전국의 다문화가족 17,849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7,109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5,540명, 만 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6,079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임금함수 추정을 위해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총 16,575명의 자료를 추출하고, 그 다음으로 이 중 중국 여성결혼이민자 3,231명, 중국(한국계)⁵⁾ 여성결혼이민자 1,863명,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2,719명,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1,425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구성표에는 가구구성원, 가구특성의 항목이 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에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이 있고, 배우자 조사표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와 항목이 유사하나 자녀양육 및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내용이 2012년과 달리 추가 조사되었다. 만 9~24세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생활, 성장배경과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2.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을 사용하였다.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은 표본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를 교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료의 경우 전체 표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일정한 임금 값을 가진 표본과 참여하지 않아서 임금이 0인 표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 0인 표본을 제외하고, 임금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면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게 된다.

5) 행정자치부(2016)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추출 시, 출신국적이 '중국'인 국적취득자 중 귀화 시 이름이 중국식이면 출신국적을 '중국'으로 처리하고, 귀화 시 이름이 한국식이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상 개명사항을 확인하여 중국식 이름에서 한국식으로 개명하였으면 '중국', 개명한 이력이 없거나 개명 전에도 한국식 이름이면 '한국계중국인'으로 선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한국계)는 조선족으로 통칭하고 있다.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함수

$$Z_i^* = \alpha W_i + \varepsilon_i$$

where

$$Z_i = 1 \text{ if } Z_i^* > 0$$

$$Z_i = 0 \text{ if } Z_i^* \leq 0$$

임금에 대한 함수

$$Y_i^* = \beta X_i + \mu_i$$

where

$$Y_i = Y_i^* \text{ if } Z_i = 1$$

$$Y_i = 0 \text{ if } Z_i = 0$$

Y_i^* 는 임금을 나타내는 연속 잠재변수이고, Y_i 는 실제 관찰된 임금을 나타내는 관찰변수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관찰변수 Y_i 는 0의 값을 갖는다. Z_i^* 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잠재변수이고, Z_i 는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관찰변수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W_i 와 X_i 는 각각 경제활동참여와 임금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벡터이고, α 와 β 는 각각에 대한 회귀계수들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ε_i 와 μ_i 는 각 회귀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때, $Z_i = 1$,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임금에 대한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begin{aligned} Y_i^* &= \beta X_i + \mu_i \\ &= \beta X_i + E(\mu_i | Z_i^* > 0) + \eta_i \\ &= \beta X_i + E(\mu_i | \varepsilon_i > -W_i \alpha) + \eta_i \end{aligned}$$

이 경우 임금함수의 오차항 μ_i 는 조건부기대값 $E(\mu_i | \varepsilon_i > -W_i \alpha)$ 과 무작위 변수 η_i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만약 μ_i 와 ε_i 가 독립적이라면, $\varepsilon_i > -W_i \alpha$ 조건 하에서도 μ_i 의 기댓값은 0이 되어 기존의 임금함수와 동일해진다. 그러나 μ_i

와 ε_i 가 서로 상관을 갖는다면, μ_i 의 조건부 기댓값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는 0이 아니다. 그렇다면 Y_i 는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만큼의 편의를 갖게 된다. 실제로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임금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함수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의 핵심은 선택편의가 오차항 μ_i 를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만큼 편위(bias)되므로 이 조건부 기댓값을 추정하여 모형에 변수로 투입함으로써 편의를 보정하는 것이다. Heckman(1979) 모형에서는 μ_i 와 ε_i 가 이변량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1단계에서 프로빗 모형을 통해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 \sigma_{\mu\varepsilon} \cdot \frac{\phi(-W_i\alpha)}{1 - \Phi(-W_i\alpha)} = \sigma_{\mu\varepsilon} \cdot \lambda(-W_i\alpha)$$

ϕ 는 표준정규 확률밀도함수이고, Φ 는 표준정규 누적분포함수이다. 이 함수들의 비율로 표현되고 있는 $\lambda(-W_i\alpha)$ 는 IMR(Inverse Mill's ratio) 또는 위험율(hazard rate)이라 한다(Greene, 2000). λ_i 는 각각의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 경제활동참여 여성결혼이민자 표본으로부터 배제될 순간적 확률을 보여주는 선택확률의 변수이다. 또한 실제 선택이 일어난 후 임금함수에서 발생하는 오차항의 조건부 기댓값을 의미하므로 실제 임금함수에서 λ_i 만큼의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의 절단회귀분석에서 λ_i 변수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하게 되면 0이 아닌 오차항의 기댓값을 보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반영한 2단계의 절단 회귀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Y_i | Z_i = 1, X_i) = X_i\beta + \sigma_{\mu\varepsilon} \lambda_i$$

만약 λ_i 의 회귀계수인 $\sigma_{\mu\varepsilon}$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μ_i 와 ε_i 의 공분산 $\sigma_{\mu\varepsilon}$ 는 0, 즉 μ_i 와 ε_i 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 경우 표본을 선택한 뒤에도 임금함수의 오차항은 0이 되므로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은 λ_i 변수가 가지는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통해 표본선택편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참가 및 임금이 높을 것이다.
- (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은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참가를 낮출 것이다.
- (3) 국가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피설명변수로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시간당임금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여부는 “당신은 지난 1주일(2015. 6. 28~7. 4)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더미변수이다. 시간당임금은 월평균임금을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월평균근로시간은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몇 시간 정도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일한 시간을 응답한 변수로 해당 시간에 4주를 곱하여 구성하였다. 월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2015. 4. 1~6. 30) 동안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세금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라는 질문에 ‘50만 원 미만’부터 50만 원 간격으로 ‘500만 원 이상’의 총 12개 카테고리 응답을 하고 있는 변수로, 각 카테고리의 중간 값, 예를 들어 ‘50만~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75만 원’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⁶⁾

설명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 변수와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변수로 구성하였다. 인적자본변수는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본국 직무 경험이며, 자녀양육 변수는 18세 이하의 자녀유무이다. 남성인 경우 1, 연령은 연속변수로 구성⁷⁾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상인 경우 1의 값의 갖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출신국에서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6) 단, ‘50만 원 미만’은 25만 원, ‘500만 원 이상’은 525만 원으로 구성하였다.

7) 학력을 더미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학력 효과의 비선형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각 국가별로 특성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예, 필리핀: 고졸 이상이 92%),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한국에 오기 전 출신국에서 일한 경험을 나타낸 변수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일에 대한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의 숙련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험은 취업 및 임금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Mincer, 1958, 1974),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출신국에서의 일한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Matto et al., 2008). 한국어 능력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말하기, 듣기, 일기, 쓰기 영역별로 ‘1’의 ‘매우 잘한다’에서부터 ‘5’의 ‘전혀 못한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당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iswick and Miller, 2007;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 학력은 교육연수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18세 이하 자녀 유무(김정호, 2010; 조선주, 2009)는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녀관련 변수는 기혼여성의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치며, 유보임금은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참여식에만 사용하였다(조선주, 2009).

기타 변수로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구거주지역을 사용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결혼이민자 개인의 소득은 제외한 순가구소득으로서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500만~600만 원 미만, 600만~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간의 중간 값으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가구의 거주지역이 동부(도시)이면 1의 값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거주지역은 노동수요적 측면인 노동시장환경 관련 요인으로 지역 등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채구목, 2007). 아울러 해당 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 참여식에만 사용하였다(조선주, 2009). 분석변수의 기술통계값은 <표 1>, <표 2>와 같다.

4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시간당임금은 평균 6천 원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 7천6백 원, 중국 6천8백 원, 베트남 5천8백 원, 필리핀 3천4백 원으

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연령은 36.5세로 나타났고,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가 44.4세로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한편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28.6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학력은 11.4년이었는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학력은 13.3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10.1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순가구소득은 226.7만 원이었으며,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순가구소득은 284.8만 원,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204.6만 원,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183.4만 원,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15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개인임금은 가장 높으나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개인임금은 가장 낮으나 가구소득은 두 번째로 높다.

〈표 1〉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 전체

변수	단위	평균	변수	단위	평균
ln(시간당임금)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838	한국어_말하기	1:매우 잘함 - 5:전혀 못함	2.235
시간당임금	만 원	.601	한국어_듣기		2.129
월평균임금	만 원	114.469	한국어_읽기		2.270
경제활동	참여=1	.984	한국어_쓰기		2.495
연령	세	36.594	8세 이하 자녀여부	있음=1	.545
학력	고졸 이상=1	.470	가구거주지역	동부 (도시)=1	.628
모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1	.806	ln(순가구소득)	순가구 소득의 로그값	5.240
한국 체류기간	연수	9.054	순가구소득	만원	226.761

〈표 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 국가별

변수	단위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ln(시간당 임금)	시간당임금의 로그값	-.766	-.680	-1.008	-.949
시간당임금	만 원	.686	.764	.582	.349
월평균임금	만 원	122.192	129.084	98.331	102.192
경제활동	참여=1	.978	.986	.988	.992
연령	세	39.712	44.428	28.699	34.348
학력	고졸 이상=1	.499	.550	.429	.375
학력(고졸 이상)	이상=1	.499	.550	.429	.375
모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1	.833	.843	.738	.828
한국어_말하기	1 : 매우 잘함 ~ 5 : 전혀 못함	2.021	1.449	2.761	2.746
한국어_듣기		1.930	1.432	2.605	2.581
한국어_읽기		2.103	1.552	2.751	2.672
한국어_쓰기		2.319	1.680	2.998	3.001
한국체류기간	연수	9.855	12.136	6.206	8.640
8세 이하 자녀 여부	있음=1	.449	.281	.795	.628
가구거주지역	동부(도시)=1	.654	.747	.546	.569
ln(순가구소득)	순가구소득의 로그값	5.510	4.875	5.046	5.110
순가구소득	만 원	284.814	157.265	183.401	204.642

IV. 실증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국가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Heckman (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3>, <표 4>에서 전체, 중국, 베트남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λ_i 의 회귀계수가 $\sigma_{\mu\epsilon}$ 가 유의수준 0.01, 0.05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μ_i 와 ϵ_i 의 공분산 $\sigma_{\mu\epsilon}$ 는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이다. 즉, 임금의 오차항 μ_i 와 경제활동참여 확률의 오차항 ϵ_i 가 상관을 갖는다는 것으로 표본선택에 편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단계별로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경우(표 3)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는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세 이상 자녀여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는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보다 경제활동참여를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어 듣기능력이 좋을수록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순가구 소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8세 이하 자녀여부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임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수록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은 한국어 듣기와 쓰기를 잘할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둘째로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강혜정 외, 2012)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의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임금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는 경제활동참여자가 구분된 상황에서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독자력 영향력이 희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실증분석의 기본모형은 Mincer(1974)가 제시한 인적자본 형성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을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저장(stock) 수준의 함수로 가정한다. 따라서 일련의 양의 순투자는 일생에 걸쳐 임금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대로 순투자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즉 생산기술이 마모되는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감소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임금함수는 경력단절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남성의 임금을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호, 2010).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는 출산 및 육아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 학업기간과 취업기간에 획득한 기술이 마모될 수 있다. 즉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생산기술이 마모되어 임금

8) 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고학력 결혼이민자들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임금은 낮은 일자리를 가지는 반면, 저학력자들은 상대적으로 힘든 일자리 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력별로 종사산업이나 직종 분포가 다를 경우 상기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산업이나 직종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민국가가 출신국가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한국어 읽기 능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해당 이민자의 경우 다른 출신국의 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표 2), 이들이 설문응답 시 말하기, 듣기 등 보다 읽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임금은 순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와 비교하였을 때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강혜정 외, 2012).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8세 이하 자녀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한국어 읽기 능력이 좋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고졸 학력 이상일수록 임금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이하의 자녀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임금은 순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증분석 결과 : 전체

변수명		1단계	2단계
		추정치(표준편차)	추정치(표준편차)
인적자본	연령	.013* (.007)	.024*** (.003)
	학력(고졸더미)	.160* (.090)	.230*** (.050)
	모국에서 일한 경험	.116 (.106)	.146** (.055)
	한국어_말하기	-.024 (.115)	.008 (.048)
	한국어_듣기	-.114 (.123)	-.207*** (.051)
	한국어_읽기	.169 (.104)	.247*** (.051)
	한국어_쓰기	.065 (.083)	.090** (.037)
	한국체류기간	-.008 (.010)	-.017** (.005)
자녀	8세 이하 자녀유무	-.017 (.108)	-
가구	가구거주지역	-.141 (.096)	-
	ln(순가구소득)	.141** (.057)	.029 (.037)
출신국 (ref. 필리핀)	국가더미_중국	-.516** (.179)	-.422*** (.117)
	국가더미_중국(한)	-.221 (.197)	-.093 (.085)
	국가더미_베트남	-.104 (.182)	-.106 (.068)
λ(IMR)		-	17.570** (2.298)
상수		1.003** (.473)	-2.863*** (.405)
Pseudo R ²		0.041	-
R-squared		-	0.027
Adj R-squared		-	0.025

주: * p<0.1, ** p<0.05, *** p<0.01.

〈표 4〉 실증분석 결과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1단계			
변수명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추정치(표준편차)			
인적 자본	연령	.010 (.009)	.016 (.013)	.009 (.021)	.028 (.037)
	학력(고졸더미)	.249* (.130)	.362* (.214)	-.017 (.195)	-.182 (.335)
	모국에서 일한 경험	.146 (.157)	.060 (.267)	.100 (.209)	.023 (.420)
	한국어_말하기	.124 (.194)	-.190 (.329)	-.038 (.225)	-.381 (.312)
	한국어_듣기	-.093 (.206)	-.518 (.390)	-.129 (.219)	-.142 (.336)
	한국어_읽기	.235 (.157)	.815* (.376)	-.266 (.220)	.537* (.305)
	한국어_쓰기	-.102 (.116)	-.020 (.229)	.460** (.210)	.017 (.257)
	한국체류기간	-.016 (.014)	.023 (.024)	-.019 (.210)	-.013 (.055)
자녀	8세 이하 자녀유무	-.008 (.157)	.008 (.272)	-.180 (.256)	.271 (.371)
가구	가구거주지역	-.210 (.143)	.033 (.234)	-.230 (.202)	.172 (.334)
	ln(순가구소득)	-.029 (.114)	.263* (.105)	.248** (.111)	.143 (.184)
상수		1.559 (.877)	-.418 (.986)	.974 (.938)	.715 (1.582)
Pseudo R ²		0.044	0.091	0.066	0.106

〈표 4〉의 계속

변수명		2단계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추정치(표준편차)			
인적 자본	연령	.041*** (.004)	-.007 (.005)	.001 (.008)	-.025** (.010)
	학력(고졸더미)	.540*** (.087)	-.215** (.099)	.100 (.078)	-.217* (.118)
	모국에서 일한 경험	.341*** (.093)	-.182 (.117)	.055 (.088)	-.105 (.140)
	한국어_말하기	.287** (.086)	.125 (.144)	-.059 (.082)	.213* (.125)
	한국어_듣기	-.230* (.085)	-.181 (.152)	-.075 (.083)	-.190** (.114)
	한국어_읽기	.437*** (.064)	.131 (.101)	-.100 (.079)	.000 (.127)
	한국어_쓰기	-.209** (.064)	-.003 (.101)	.152 (.095)	.084 (.085)
	한국체류기간	-.039*** (.007)	-.016 (.010)	-.001 (.014)	.017 (.016)
가구	ln(순가구소득)	.314*** (.056)	-.417*** (.065)	-.104 (.071)	-.389*** (.070)
λ (IMR)		19.215*** (2.326)	-2.907 (2.136)	9.614** (2.832)	-2.035 (3.415)
상수		-5.925*** (.482)	2.084** (.658)	-.737 (.571)	1.530** (.589)
R-squared		0.059	0.065	0.032	0.056
Adj R-squared		0.055	0.057	0.026	0.043

주: * p<0.1, ** p<0.05, *** p<0.01.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

으며, 여성결혼이민자도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출신국가에 따라 그 영향력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인적자본 변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즉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 및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중국(한국계)와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즉, 높을수록 임금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학력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민국가가 출신국가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 말하기, 듣기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임금함수 추정에서 이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조성호 외, 2015) 본 분석에서는 중국 출신의 이민자들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며, 이들이 여성으로서 갖는 노동시장 경험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전업주부로 있던 여성들이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후 또는 경제적 상황 악화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Kossoudji, 1998)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자녀양육 변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민자에게 8세 이하의 자녀유무는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자녀,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양승

주, 1995; 서병선·임찬영, 2004; 김현숙, 2005), 본 실증분석 결과는 여성결혼 이민자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노동시장 참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결혼 및 자녀출산·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인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유무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국내 이민자 계층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나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이규용 외, 2014) 이들의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결과라 하겠다.

이 밖에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구소득이 있는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상태에서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타 가구원의 소득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병선·임찬영, 2004; 김현숙, 2005; 황수경, 2002). 이는 비노동소득이 증가할 경우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는 늘고 열위재인 노동공급은 줄어든다는 소득효과를 잘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소득효과를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데, 배우자 소득이 소득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 여성의 관측되지 않은 능력이나 자원의 측면을 대표하고 있는데 따른 것(황수경, 2004)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 요인들을 고려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 고유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발전에 대한 초석이 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가구단위로 표본을 이중추출하여 표집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구 내 개인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

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인적자본 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본 국적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으며, 자녀양육 변수(어린자녀 유무)는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가구 변수 등을 고려한 보편성과 국적 및 인적자본 변수를 고려한 차별성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정확한 직무경험 및 직종이 반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엄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정·이규용(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 (2) : 49~73.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 (12) : 95~124.
- 김민길·김영직·조민호(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5 (4) : 65~106.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 (1) : 159~193.
- 김영하·김정희·이경숙(2008).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 김이선·양인숙·황정임·고혜원(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추진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김정호(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인적자본 형성 분석』. KDI.
- 김현숙(2005).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한국경제학회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7).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박능후·선남이(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다문화의식』.
- 법무부(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2월호』(URL :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서병선·임찬영(2004).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국제경제연구』 10(1) : 141~167.
- 설동훈·윤형식(2005).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 손기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의 특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 19~36.
- 심창학(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
- _____ (2003).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 209~238.
- 양승주(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행태 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8(1) : 63~87.
- 양인숙·김선혜(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경영연구』 34(1) : 237~266.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 5~28.
- 윤홍식·김혜영·이은주(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 263~293.
- 이규용(2014).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토론회 자료.
- 이규용·노용진·이정민·이혜경·정기선·최서리(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명선(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이옥경(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전홍주·배소영·곽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 지원의 실제와 의미 :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 161~186.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혜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조선주(2009).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9(3) : 29~54.
- 조선주·오현경(2017). 『우리나라 이민자의 특성과 노동공급』.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조성호·변수정(2015a).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38 : 59~87.
- _____ (2015b).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15(2) : 25~55.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 35~61.
- 최형성(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 중국,

- 필리핀, 베트남 출신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30(3) : 197~211.
- 최형재(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5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 행정자치부(2015).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발표자료.
- _____ (201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통계자료.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근로」.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Adamuti-Trache, M. and R. Sweet(200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Credentials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2 (2)(Summer 2005) : 177~201.
- Becker, Gary 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swick, B. R., and P. W. Miller(2007).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iscussion Paper No. 2670. Bonn, Germany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Retrieved from <http://ftp.iza.org/dp2670.pdf>.
- Ferrer, A. and W. C. Riddell(2008). “Education, credentials, and immigrant earning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1(1) February/février 2008 : 186~216.
- Fong, E. and X. Cao(2009). “Effects of Foreign Education on Immigrant

- Earnings.” *Canadaian Studies in Population* 36 (1-2) (Spring/Summer 2009) : 87~110.
- Friedberg, Rachel M.(2000). “You Can’t Take It with you? Immigrant Assimilation and the Portability of Human Capita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 (2) : 221~251.
- Greene, William(2000). *Econometric Analysis*, 4th Ed., Wiley.
- Hotz, V. J. and R. Miller(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Life Cycle Fertility and Female Labor Supply.” *Econometrica* 56 : 91~118.
- Kanas, A., and F. van Tubergen(2009).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 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88 (2) : 893~916.
- Kossoudji SA, Cobb-Clark DA(1998). Coming Out of the Shadows: Learning about Legal Status and Wages from the Legalized Populayion, Miemo.
- Long, James E.(1980).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Earnings : Some Evidence for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88 (3) (June 1980) : 620~629.
- Matto, A., I. C. Neagu and C. Ozden(2008). “Brain Waste? Educated Immigrants in the US Labor Marke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7 (2) : 255~269.
- Mincer, J.(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4) : 281~302.
- _____(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roz(1987). “The Sensitivity of an Empirical Model of Married Women's Hours of Work to Economic and Statistical Assumptions,” *Econometrica* 55 (4) (Jul., 1987) : 765~799.
- Sanromá, E., R. Ramos and H. Simón(2009). Immigrant Wages in the Spanish Labour Market : Does the Origin of Human Capital Matter? (IZA Discussion Paper No. 4157). Bonn, Germany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Shields, M. A. and S. Wheatley-Price(2002). “The English Language Fluency and Occupational Success of Ethnic Minority Immigrant Men Living in English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1): 137~160.

Silver, H.(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 531~578.

Zeng, Z., and Y. Xie(2004).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1075~1108.

abstract

A Study on the Wage Determinants among the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 Chinese, Korean-Chinese, Vietnamese, Pilipinas

Cho Sunjoo · Min Hyunjoo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wages among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from China, China_Korea, Vietnam and Philippines, using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adopts the Heckman’s two stage model to correct the selection bias in regard to the labor supply,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the proficiency at Korean language and the presence of the young child (ren) at home on the wage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educational attainments from the mother country are likel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ntering the labor market, to be related to the wage rates among immigrant women. For immigrant women from mainland China, more educational attainments are likely to lower the probability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hile those are likely to increase the wage for immigrant women from Korean-Chinese and Philippines. Second, immigrant married women are likely to get higher earnings as they attain better ability of listening, comprehending and writing Korean. Third, immigrant women from China and Chinese Korean women experience lower earnings as they stay longer in Korea. Fourth, the 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at home aren’t likely to lower earnings for all the immigrant women. Finally, immigrant women experience higher earnings as their net family income (not including immigrant women’s own earnings) increases or decreases.

Key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asian married immigrant women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mmigrant women and wages,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human capital and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